

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내 영구시설물 축조 (노원구의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) 동의안

의안 번호	240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25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노원구에서는 당현천 및 중랑천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화장실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노원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에 주민 편의시설인 「공중화장실」을 신축하고자 함
- 나. 이에, 서울시에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 부지 사용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토지개요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노원구 772(노원자원회수시설내 부지)
- 면 적 : 40㎡
- 소 유 자 : 서울특별시(재산관리관 : 자원순환과)

나. 시설 개요

- 주요시설 : 공중화장실

계	장애인용		남성용		여성용변기
	남	여	소변기	대변기	
12	1	1	3	2	3

- 사 업 비 : 300백만원(구비)
 - 화장실 구매 96백만원, 공사비 54백만원, 진입로 150백만원
- 사업기간 : 2021. 7. ~ 2021. 10.

다. 그간의 추진사항

- 2021. 3. : 서울시 토지사용 가능 여부 문의(노원구→서울시 자원순환과)
- 2021. 4. :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절차 안내(서울시 자원순환과→노원구)
- 2021. 5. :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출(노원구→서울시 자원순환과)

라. 시의회 동의시, 향후 추진일정

- 2021. 7. : 공사 발주 시행
- 2021.10. : 공사완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량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.
 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 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(이하 "공용재산"이라 한다)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(이하 "공공용재산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 타 : 위치도 및 현장사진

○ 위치도



○ 공중화장실 대상지 현장사진



※ 작성자 :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 신정엽(☎ 02-2133-3683)